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1호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제목 :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6. 6. 23.~2026. 7. 10. (17일간)

3. 공고사항

가. 처분사유: 「전자상거래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위반

나. 처분근거: 「전자상거래법」 제45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42조

3. 대 상 자

성명	소재지	처분내용 (과태료부과금액)	반송사유	비고
백*보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6	5,000,000원	폐문부재	

4. 내 용

가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정책과(☎032-560-3265)

2026년 6월 23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